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입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시스템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기본방향
2.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 조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장기 추진일정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입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도입계획을 제출한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08.2.29>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입계획의 수립 지원
2. 기술 제공
3. 교육·훈련 지원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보안업무규정」 제2조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8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함은 제1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 (기술평가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에 관한 지침에의 적합성을 말한다.

제1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지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화 관련 전문가 또는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4.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평가 지원

제1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방·외교·안보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2.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유지 또는 공신력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2.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3.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감리기준(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감리법인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감리원 중에서 구체적인 해당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 중에서 그 총괄업무에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감리원 5인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동표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동시에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감리총괄 업무의 수행, 감리원의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계속교육 :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 종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사한 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 도

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본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 전문교육 :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계속교육 : 모든 등급의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05> 까지 생략